◉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4-154호

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5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(항만용역업) 사업수행실적 조사 결과에 따라 1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「같은법」 제26조의5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06일

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

항만운송관련사업(항만용역업) 업체 행정처분 통지 공고

1. 처분의 제목: 항만운송관련사업(항만용역업) 업체 행정처분

2. **처분의 당사자** : 4개 업체

사업의 종류	업체명	대표자	주소
항만용역업	에스아이에이(주)	신*선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97
항만용역업	(주)프로원	김*규	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94-10
항만용역업	(주)태검	박*길	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772번길 35
항만용역업	팔팔수중개발	정*철	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항로405번길 121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내용 및 법적 근거

사업의	업체명	처분의 원인이	처분내용	법적 근거
종류	현제경	되는 사실	시단네공	H'7 L/1
항만용역업	에스아이에이(주)	사업수행실적 없음 (1차 위반)	항만용역업	「항만운송사업법」
			사업정지 3개월	제26조의5 및
			(24.12.23.~25.3.22.)	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1조
항만용역업	(주)프로원	사업수행실적 없음 (1차 위반)	항만용역업	「항만운송사업법」
			사업정지 3개월	제26조의5 및
			(24.12.23.~25.3.22.)	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1조
항만용역업	(주)태검	사업수행실적 없음 (1차 위반)	항만용역업	「항만운송사업법」
			사업정지 3개월	제26조의5 및
			(24.12.23.~25.3.22.)	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1조
항만용역업	팔팔수중개발	사업수행실적 없음 (1차 위반)	항만용역업	「항만운송사업법」
			사업정지 3개월	제26조의5 및
			(24.12.23.~25.3.22.)	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1조

4. 유의사항

○ 위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할 경우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3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, 「같은법」 제26조의5에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아울러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이내에 우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업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투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의신청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투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	었이 부터 0일 형에
ㅇ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(051-609-6443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	끝.